

「 』
[2010. 3.19] [22075 , 2010. 3.15,]
() 02 - 2023 - 7529

1 () 「 』
[2009.7.7]

1 2() 「 』 (" ") 2 5 6
(" ") . < 2010.3.15 >

1. : 37 2 500
37 가

2. : . 6

가.
.
.
가
가

[2009.7.7]

2 (가) 5 1
가 . <

2010.3.15 >

1. .
2.

3. 가 .
4. 가

[2009.7.7]

3 () 6 (" ") 1
1 20 .
. < 2010.3.15 >

가

. < 2010.3.15 >

[2009.7.7]

4 () 2 . , .

(闕位)

[2009.7.7]

5 ()

[2009.7.7]

6 () 3 1 가

. < 2010.3.15 >

[2009.7.7]

7 () 1 ,

. < 2010.3.15 >

[2009.7.7]

8 ()

[2009.7.7]

9 ()

[2009.7.7]

10 () 7 1 가가 (" ")

7 1 11 1 . < 2010.3.15 >

7 1 가 (" ")

「 」 7 7

[2009.7.7]

11 () 7 1 1 5 1
2

1.

2.

3.

4.

5. (病歴)

6.

1 1 2

.< 2010.3.15>

[2009.7.7]

12 ()

10 1

가

7 1

11 2

.< 2010.3.15>

1

[2009.7.7]

13 ()

10 1

.< 2010.3.15>

1. (産前) · (産後)

2.

3.

4. 「 」 11 1

1

.< 2010.3.15>

[2009.7.7]

14 <2009.7.7>

15 () 14

24

14 1 1

14 1 2

[2009.7.7]

16 () 15 5 1

1. 「 」 「 」 1 . ,
2. , ()

[2009.7.7]

16 2(가) 15 5 2 " , 2
가 "

1. 「 」 2 1
2. 1
가. 가

(化膿性)

[2009.7.7]

17 () 15 9 1 2 1 .

[2006.6.7]

17 2 <2009.7.7>

17 3() 15 11 1
1 2
1 2 1 가 , , 가 3

[2009.7.7]

17 4() . . 15 11

1

20

• •

가

7

2

.< 2010.3.15>

[2009.7.7]

18 () 16 1 (" ")

1.

2.

3.

4.

5.

6.

7. ,

8.

9.

10.

11.

[2009.7.7]

19 <1999.5.21>

20 <1999.5.21>

21 <1999.5.21>

22 () 27 1 2 3 .

[2009.7.7]

< 22075 ,2010. 3.15>

1 () 2010 3 19 . < >

2 () <63>

<64>

1 2 2 , 2 , 3 3 , 6 1 , 7 , 10 1 ,
11 3 , 12 1 13 1 4 " 가 " " "
3 2 " 가 " " " .
13 2 17 4 5 " 가 " " " "

<65>

<187>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기준의 1차란 처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이후의 처분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 산후조리업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2) 산후조리원 폐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제2호나목1) 및 같은 목 4)부터 6)까지는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법 제15조의8제1호 및 제15조의9제1항			

경우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2)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나.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의8제2호 및 제15조의9제1항			
1)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2) 정신질환자		업무정지 2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3) 마약류 중독자		업무정지 2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4)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5)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6)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폐쇄명령
다. 법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법 제15조의8제3호 및 제15조의9제1항			

한 경우				
1) 건강기록부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3)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라. 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의8제4호 및 제15조의9제1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마. 법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의8제4호 및 제15조의9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바. 법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의8제5호 및 제15조의9제1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폐쇄명령

사. 법 제15조의9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15조의9제2항 제1호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아.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5조의9제2항 제2호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11	800 이상 ~ 900 미만	88,000
12	900 이상 ~ 1,000 미만	94,000
13	1,000 이상 ~ 1,100 미만	100,000
14	1,100 이상 ~ 1,200 미만	106,000
15	1,200 이상 ~ 1,300 미만	112,000
16	1,300 이상 ~ 1,400 미만	118,000
17	1,400 이상 ~ 1,500 미만	124,000
18	1,500 이상 ~ 1,600 미만	130,000
19	1,600 이상 ~ 1,700 미만	136,000
20	1,700 이상 ~ 1,800 미만	142,000
21	1,800 이상 ~ 1,900 미만	148,000
22	1,900 이상 ~ 2,000 미만	154,000
23	2,000 이상	160,000

[별표 2] <개정 2009.7.7>

과징금 산정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다.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기간(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 마.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
-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 (단위: 백만원)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단위: 원)
1	30 미만	30,000
2	30 이상 ~ 50 미만	35,000
3	50 이상 ~ 100 미만	40,000
4	100 이상 ~ 200 미만	46,000
5	200 이상 ~ 300 미만	52,000
6	300 이상 ~ 400 미만	58,000
7	400 이상 ~ 500 미만	64,000
8	500 이상 ~ 600 미만	70,000
9	600 이상 ~ 700 미만	76,000
10	700 이상 ~ 800 미만	82,000

[별표 3] <개정 2009.7.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하는 때에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법 제27조제2항제1호	100
나. 법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	200
다. 법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법제27조제2항제2호	100
라. 법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도록 한 산후조리업자	법 제27조제1항제2호	170
마. 법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150
바.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200
사.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	법 제27조제2항제3호	70

조리업자		
아. 법 제15조의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4호	50
자.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5호	50